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76
----------	-------

발의연월일 : 2026. 7. 27

발 의 자 : 장철민 · 송재봉 · 백혜련
정진욱 · 전은수 · 박정현
황정아 · 박용갑 · 허성무
이인영 · 권향엽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동생산성 정체 등으로 우리 제조업의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을 제조공정과 제품·서비스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기업과 생산기술, 제조현장에서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 등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제조공정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자율제조·인공지능로봇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조기업, 인공지능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역량을 결집하는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

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기업 간 협업, 제조현장의 숙련지식과 산업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인증 및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운영과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의 구축,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 활용,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성능인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제조기업과 인공지능기업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에 필요한 기술·인력·데이터·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다. 산업인공지능전환, 산업인공지능제품,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 및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 등 산업인공지능전환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라. 산업인공지능전환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위원회가 얼라이언스의 운영, 선도사업 지원,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및 산업인공지능제품 성능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마. 제조기업,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수요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운영을 촉진하고, 참여 기업 등에 기술개발, 인프라, 금융, 규제개선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숙련기술자의 작업행동, 판단, 노하우 및 지식 등 제조현장의 암묵지 데이터를 수집·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인공지능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실증·사업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산업인공지능전환 지원 전문회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특화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 중 국가정책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외 선정,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비율의 차등 적용, 기술료 감면 및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자. 국가·경제안보,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및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시험·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 구역을 지정하고, 성능·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증센터 및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별도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산업인공지능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신뢰성 등의 성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취소와 제작결함의 공개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타. 산업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개발, 사업화, 기반 조성 및 기업의 데이터센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파. 산업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집적·활용하기 위한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 등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거나 데이터 가공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하.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수집·보관되는 산업데이터를 국가안전

보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고, 등급별
보안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5조).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467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산업인공지능전환”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산업에 적용하

거나 인공지능을 산업에 활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산업데이터”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 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산업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중 산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환경 분석, 공정 관리, 시스템 자동화 및 제어, 품질 관리, 유지보수, 연구개발 등 산업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5. “산업인공지능제품”이란 산업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및 그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
6.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산업데이터 활용”이란 산업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8.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한다)이란 산업인공지능을 직접 연구개발하거나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연구개발한 후 이를 자신의 명의 또는 상호로 생산·판매·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화하는 자를 말한다.
9.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이하 “수요기업”이라 한다)이란 산업인공지능을 구매하거나 도입하여 이를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생산, 운영, 공급 등의 과정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0.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라 한다)란 제조업 분야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조기업, 공급기업, 수요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11. “산업데이터 플랫폼”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등이 산업데이터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지원하는 전자적 통합 서비스 및

기반을 말한다.

12.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이하 “라이브러리”라 한다)란 원활한 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제34조에 따라 구축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13.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업등이 산업인공지능전환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산업인공지능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14. “국가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산업인공지능전환의 촉진에 관하여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산업인공지능전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2장 산업인공지능전환 정책의 수립 등

제5조(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산업데이터 생성·활용·보호·거래·보안·안전 등 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데이터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

한 사항

8. 지역의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9. 산업인공지능전환에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10. 산업인공지능전환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산업인공지능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하여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인공지능의 기술적 수준과 활용 수준 등을 진단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범위와 방법, 제3항에 따른 진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산업인공지능전환위원회) ① 산업인공지능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인공지능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산업인공지능전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산업인공지능전환과 관련된 정책 추진,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업데이터 생성·활용·보호·거래·보안·안전 등 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얼라이언스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기업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라이브러리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성능인증 등에 관한 사항
10. 산업인공지능전환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11. 그 밖에 산업인공지능전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공무원과 임직원 또는 산업인공지능전환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

제9조(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등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의 구성·운영을 촉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2. 산업데이터 활용 및 산업인공지능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 및 강화
3. 산업인공지능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투자 등 금융 지원
4.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기업등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③ 얼라이언스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0조(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①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②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누구든지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산업데이터 활용의 목적 및 성격, 산업데이터의 활용이 그 산업데이터의 현재 또는 잠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산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그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산업데이터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산업데이터의

무결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데이터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4항 전단, 제5항 후단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1조(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생성·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등의 산업데이터 생성·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데이터 활용 계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암묵지데이터 지원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의 작업행동·판단·노하우 및 지식 등과 관련한 산업데이터(이하 “암묵지데이터”라 한다)를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암묵지데이터의 수집 지원

2. 암묵지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인공지능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지원

3. 암묵지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인공지능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 지원
4. 기업등간의 암묵지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5. 암묵지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암묵지데이터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산업인공지능전환 지원 전문회사) ① 기업등의 산업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인공지능전환 지원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산업데이터를 수집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
2. 산업데이터 거래행위의 알선 및 거래행위의 알선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사업
3. 산업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컨설팅 실시, 장비·소프트웨어·산업인공지능 등의 판매·제공 사업
4. 산업데이터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대행하여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회사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특화기업으로 지정하고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기술·서비스의 개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의 표준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의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기업 간 협력 가능성 증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산업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2. 산업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거래
3. 산업데이터 간 연계
4. 산업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5.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 관련 국제표준과의 연계
6. 그 밖에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 산업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 추진 과정에서 산업데이터 플랫폼 등의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표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6조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제37조에 따른 협회 등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안을 제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표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적절한 품질관리 및 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산업데이터 품질 진단 기준
2. 산업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 및 체계
3. 산업데이터 품질 인증 및 개선
4. 기업의 산업데이터 수집·확보 및 처리 지원
5. 그 밖에 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산업데이터 플랫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플랫폼 현황 조사 및 연구
2. 플랫폼 구축 및 운영
3. 플랫폼 관련 기술·장비·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4.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5. 플랫폼 간 상호 호환성 확보 및 연계 지원

6. 플랫폼을 활용한 산업데이터 공유·거래
7. 플랫폼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8.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의 지원 등

제17조(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선도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업등의 협력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도사업을 하려는 기업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계획서를 신청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인공지능전환 목표
2. 선도사업 내용
3. 산업인공지능전환 기대효과
4.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5.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6.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도사업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에 따라 선정한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등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2. 산업인공지능전환과 관련된 신제품·신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
3.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활동과정의 효율화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데이터의 활용
4. 산업데이터 플랫폼 등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 제21조에 따른 규제개선
6. 그 밖에 선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연구개발지원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며 기술개발의 난이도 또는 기술개발의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선도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도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선도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① 제17조의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은 선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 중 법령 정비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 기업등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회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⑦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선도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제 등이 불분명한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의 요건·절차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필요한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 또는 제90조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⑨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1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용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제21조에 따른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21조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 ④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절차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산업인공지능제품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시험·인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인공지능제품 시범사업구역(이하 “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인공지능제품 관련 기술 등의 성능시험 및 개발을 하는 자
2.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하여 산업인공지능제품을 제작·운영하는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증센터 구축 사업

2.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시범사업구역의 지정·변경·해제 및 시범사업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산업인공지능전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제24조(산업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의 산업인공지능전환 역량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기관 및 단체를 산업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선도사업에 참여한 기업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지정 및 운영,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지원 업무의 유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 전환에 관한 기술·장비·소프트웨어와 산업인공지능전환을 통한 제품·서비스(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등에 관한 실태·통계 조사
2. 기술등의 개발 및 사업화
3. 개발된 기술등의 평가 및 활용
4. 기술등의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5. 그 밖에 기술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6조(산업인공지능제품의 성능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이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인공지능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신뢰성 등 성능을 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이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의 기준·대상·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성능인증의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6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증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설계·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작결함의 시정 등) ①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은 성능인증을 받은 산업인공지능제품이 제26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함과 그 공개 및 시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산업인공지능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산업인공지능전환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4.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의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 개발 지원
5. 기업의 산업인공지능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
6. 산업현장 인력의 산업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7.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및 고용 지원
8.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제30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공지능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공지능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국제협력 등) ① 정부는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

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에 대한 현황 조사, 해당 외국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산업인공지능전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산업인공지능전환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
2. 산업인공지능전환과 관련된 민간 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3. 산업인공지능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4. 산업데이터 국제 표준화 등의 지원
5. 산업데이터의 부정확한 유출 방지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정부는 산업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산업인공지능전환 우수기업 선정·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인공지능전환 우수기업과 산업인공지능전환에 기여한 자(이하 “산업인공지능전환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인공지능전환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개발
 2.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
 3. 데이터센터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반 조성
 4. 데이터센터의 전문 역량 향상 및 지원
 5. 그 밖에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의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제34조(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의 구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효과적인 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라이브러리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라이브러리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기업등에게 산업데이터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등에 대하여 데이터의 가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라이브러리의 구축·운영, 데이터 제공 요청의 절차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산업데이터 보안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출·훼손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라이브러리에 수집·보관하는 산업데이터를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라이브러리에 수집·보관하는 산업데이터가 누설·유출·훼손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에 따른 등급별 보안조치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라이브러리에 접근하거나 라이브러리에 수집·보관하는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별 보안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의 준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라이브러리에 접근하거나 라이브러리에 수집·보관하는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기준·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별

보안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그 밖에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협회의 설립) ① 산업인공지능전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별 보안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4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 제36조에 따른 전담기관 및 제37조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 제3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4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전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인공지능전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전환 지원 전문회사로 본다.

제6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으로 본다.

제7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
활용지원센터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전환지원센
터로 본다.

제8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
인력 양성기관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본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
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어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9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에 관한 경과조
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선정된 산업 디지털 전
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
된 산업인공지능전환 우수기업등으로 본다.

제10조(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
관으로 본다.

제11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
경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중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로 한다.

②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를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선도사업”을 “「산업인공지능 전환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선도사업”으로 한다.

③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법률 또는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